

3.4(금)조간(인터넷 3.3(목) 12:00 이후)



## 보도자료

- ▶ 2011. 3. 3(목) 배포
- ▶ 총 2쪽 (사진 없음)

- ▶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김규석
  - ▶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행정사무관 장석철
  - ▶ 노동시장정책과 행정사무관 윤해순
  - ▶ 직업능력평가과 행정사무관 박두수
- TEL : 02-2110-7228, 010-2290-2441  
FAX : 02-6902-842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고용노동부 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고용보험 부정수급 완전히 뿌리뽑는다

□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「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」\*을 수립·시행해 왔다.

\* 2007.8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

○ '10. 11월 감사원의 감사이후, 「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」를 발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·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,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제정비,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

-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「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 대책」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.(10.12월)

○ 특히, '11년부터는 6개 고용청을 중심으로 검·경찰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여

- 부정수급액 2배 징수, 형사고발조치,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

○ 건설현장 노무비용 부풀리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

- 피보험자격 지연·허위 신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제청에 통보하여 법인세 추징에도 활용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.

\* 과태료부과실적: '10.1월 49건 82백만원→'11.1월 700건(1,328%증) 283백만원(244%증)

□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, 올해부터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

○ 취업지원프로그램\*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으며,

\* <취업성공패키지사업> <제대군인지원사업> <출소자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> 등

○ 고용창출지원금제도는 '사전 공모·심사제'로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의 소지를 차단하였다.

□ 또한,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기관에 훈련생 관리자료를 실시간 수집·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였고

○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\*하여 제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.

\* 부정수급 비율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제한 기한(90일~360일)을 차등 적용

□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,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'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'도 운영하고 있다.

\*포상금지급현황: '09년 195백만원→ '10년 329백만원 → '11.1월 38백만원

□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“전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조사관을 배치,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,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